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조(CCTV 설치목적) 영동중학교의 학교폭력,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 및 학생, 교직원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CCTV 시설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영상정보 시설관리담당자	
책임자	교장	담당자	생활안전부장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전화	031-203-2583	전화	031-203-2587	전화	031-203-258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_학교안전지킴이, 야간_시설당직원(연락처) 031-203-2585					

제4조(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순번	설치 위치	대수	투시 장소	성능
1	교문 앞 가로등	1	교문 진입로	200만화소
2	교사1동(3층 동쪽 옥상)	1	교문진입로, 농구장	200만화소
3	교사1동(3층 서쪽 옥상)	1	운동장(서쪽)	200만화소
4	교사1동(3층 중앙우측 옥상)	1	교사1동 서쪽, 주차장	200만화소
5	교사1동과 교사3동 사이(연결 통로 3층)	1	교사1동과 교사3동 사이	200만화소
6	교사3동(3층 동쪽 옥상)	1	학교숲 동쪽	200만화소
7	교사3동(3층 중앙 옥상)	1	학교숲 중앙	200만화소

8	교사2동(2층 변전실 위 벽)	1	교사2동 뒤 주차장	200만화소
9	교사2동(2층 모서리 북쪽 벽)	1	교사2동 뒤 주차장, 후문	200만화소
10	교사3동(3층 서쪽 옥상)	1	급식소 뒤 주차장	200만화소
11	교사2동(2층 모서리 동쪽 벽)	1	급식소 뒤 주차장	200만화소
12	교사1동 중앙현관	1	교사1동 중앙현관	200만화소
13	교사1동(서쪽 지하 1층 벽)	1	교사1동 서쪽 뒤	200만화소
14	교사2동(도서실 서쪽 출입구 위)	1	교사2동 서쪽 뒤	200만화소
15	급식소(세척실 출입구 위)	1	교사1동과 교사2동 사이	200만화소
16	엘리베이터 안	1	엘리베이터 안	200만화소
17	평가관리실 안	1	평가관리실 안	200만화소

제5조(안내판의 설치)

1. CCTV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 영동중학교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
3. 촬영시간 : 24시간
4.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제6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④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본관 1층 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⑤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⑥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⑦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⑧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

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 위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3.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4.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동계구역)

제9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동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과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 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화면에 찍힌 사람)	성명		집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영상정보 기록기간	201 년 월 일(시 분)부터 201 년 월 일(시 분)까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영동중학교 내 _____주변(을 찍은)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_____(서명 또는 인) 영동중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자료접근자(열람 및 재생)-		직 : () / 서명 :		

붙임 2. 영동중학교 영상정보(CCTV)자료 관리대장

영상정보(CCTV)자료 관리대장

[illegible]

붙임 3.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 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	--------------	--	-----------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